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증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6. 4. 9

나. 회부일자 : '96. 4. 9

3. 제안이유

- 일반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의무출연규정을 재정여건 및 자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 조정하고
-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지역개발심의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로 통합 운영

4. 주요골자

- 일반회계의 지역개발기금 의무출연규정(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% 이상)을 당해 년도 기금운용 여건을 감안하여 10% 범위내에서 출연하도록 조정 (안 제3조 2항)
- 위원회 정비에 따른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 폐지하고 동 기능을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수행토록 함. (안 제14조, 제15조)

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증 개정 조례안을 검토한 바,

이는 현행 조례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% 이상을 의무출연토록 되어 있으나 자금 운용상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 불합리한 면이 발생하여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여 재정여건 및 자금운용 상황을 고려하여 출연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며,

또한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기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를 기능이 유사한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골자로는

첫째, 재원조달에 있어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% 이상을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를 "10% 범위 내에서 출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."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하여 신축성있게 운용토록 하고

둘째, 응자조건에 있어 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본 위원회는 폐지를 하고 기능이 유사한 도정조정위원회로 통합하여 도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

지역개발기금관리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관계조문의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시료됨.